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59889 판결 [구상금청구소송]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598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가소149070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

변론 종결 2015. 6. 11.

판결 선고 2015. 7. 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가소149070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46,470원과 그 중 9,195,287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3.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60499호로 "이 법원 2001가소1458062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11.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1490706호(이 사건 제1심)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의 사본을 서증으로 첨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판결문이 증거로 첨부된 원고의 답변서를 송달받은 2014. 4. 22. 무렵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2011. 9. 30.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1. 10. 18. 송달된 사실, 위 2014가단60499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 등은 피고의 송달영수인인 법무사 B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9. 18.경 이 법원 2011가소1490706호 사건의 기록을 열람·복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송달영수인은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송달영수인인 법무사 B가 위 2014가단60499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답변서 및 거기에 증거로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사본을 영수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위 서류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나아가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의 소송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전달받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넘어서 판결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참조), 피고가 이 법원 2011가소1490706호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4. 9. 18.경부터 2주 이내인 2014. 9. 25.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9. 6.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험기간을 1996. 9. 6.부터 1997. 9. 5.까지로 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자치복권 신용판매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복권 외상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 있었다.

(3) 그 후 피고가 소외 은행에 복권 외상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7. 3. 7. 소외 은행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195,287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가 위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가소1458062호로 구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01. 9. 21. "피고는 원고에게 14,086,924원 및 그 중 9,195,28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1. 9. 2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1. 10. 12. 확정되었으며, 9,195,287원에 대한 1999. 8. 23.부터 2001. 9. 2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0. 12.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20,696,701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 제2, 3, 4호증이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01가소1458062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한 구상금 합계 34,783,625원(=14,086,924원+20,696,70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946,470원 및 그 중 지급보험금 9,195,287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률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인식

판사박평수

판사전상범